

부천시의회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번호	259
의 결 연 원 일	94. 2. 24 (제26회)

제출년월일 : 1994. 2. 23

제 출 자 : 변용순의원외 8인

1. 주 문

- 미44공병대 부지는 지역 여건상 시가화 지역으로 부천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시설부지로 개발되어야 하나, 동부지를 계속하여 군사시설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에 대처키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오정동소재 미군부대 부지는 시가화 지역으로 지역여건상 주민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위치로서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였으며, 미군부대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토지이용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은 충만한 상태임.
- 시의회는 시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15회, 제21회 등 의회회기 시 3명의 의원발의에 의거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던 사항임.
- 작금에 군부대 계속주둔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시민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군부대 주둔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시민을 위해 재검토 되어야 함.

3. 주요골자

- 오정동 144번지 2의 일대 100,500평은 미군부대에서 계속사용 중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군부대 부지로 사용목적 상실되므로 시민을 위한 토지로 이용되어야 함.
-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지로 기 사용 결정됨.
 - 도시기본계획 승인 _____ 건설부('92. 10. 14)
 - 도시기본계획 변경공고 _____ 부천시 공고 93-55('93. 3. 16)
- 현재 군부대 계속주둔을 위해 5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은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,
- 당초 계획대로 시민을 위한 시설부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.

4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58조